

수원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합179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4. 20 선고 2021나2156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합17927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송현지, 최정윤

변 론 종 결 2021. 7. 7.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5.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5,555,555원의 한도 내에서,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5.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359,052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6,914,6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5. 24. 체결된 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30,247,94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0,247,9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 원고는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순 번	대출과목/계좌번호	대출(한도)금액	대출신규일	대출만기일
1	기업일반운전자금	100,000,000	2010. 2. 11.	2013. 2. 8. ¹⁾
	(계좌번호 1 생략)			
2	기업일반운전자금	100,000,000	2011. 1. 14.	2013. 1. 14. ²⁾
	(계좌번호 2 생략)			
3	기업일반운전자금	220,000,000	2010. 5. 13.	2015. 5. 12.
	(계좌번호 3 생략)			

- 원고는 C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순번 제1, 2대출금과 관련하여 “C은 원고에게 175,290,089원 및 그 중 78,000,000원에 대하여는(순번 제2대출금 잔존 원금) 2012.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22%의, 92,678,465원(순번 제1대출금 잔존 원금)에 대하여는 2012.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15782)을, 순번 제3대출금과 관련하여 “C은 원고에게 38,611,948원 및 그 중 28,630,297원(제3대출금 잔존 원금)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40597)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2020. 4. 9.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액은 다음 기재와 같다.

대출과목	대출잔액	편입전 (연체)이자	편입후 연체이자	발생 연체이자	합 계
기업일반운전자금 (계좌번호 1)	62,273,524	1,781,164	3,036,097	69,623,336	136,714,121
기업일반운전자금 (계좌번호 2)	78,000,000	4,953,287	14,039,999	76,050,857	173,044,143 ⁵⁾
기업일반운전자금 (계좌번호 3)	28,551,097	10,278,151	1,891,952	31,090,109	71,811,309
합계	168,824,621	17,012,602	18,968,048	176,764,302	381,569,573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 C의 아버지 D(이하 ‘망인’)는 2018. 12. 12.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C을 포함한 3남매(상속지분 각 2/9)와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9)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5. 24.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각 부동산을 순서대로 ‘제1, 2, 3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5. 28.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같은 날 E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거래가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또한 피고는 2019. 6. 26.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한편 망인은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사망 전인 2003. 4. 22. F조합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3. 4. 4. F조합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제2, 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9. 7. 1.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또한 피고는 제2, 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9. 6. 26. G조합에 채권최고액 37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 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 수원시 팔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각 2/9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망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고 망인을 부양하여 상속인들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고, C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오랜 기간 동거하여 왔고, 제2, 3부동산을 관리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일반적인 부양의무 이행의 정도를 넘어 그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결정 참조),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기여분 산정의 협의 또한 함께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는, 제1부동산의 경우 망인이 사망하기 전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8. 9.경 E와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7,000만 원), 잔금 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일을 2019. 3. 29.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 망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일 전인 2018. 12.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5. 24. 제1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5. 28.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같은 날 E에게 2019.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망인이 생전에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제1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포기한 이상 이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제1부동산의 매매잔금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C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채권은 1억 2,000만 원이 아닌 7,000만 원이므로, 제1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감소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감소 부분은 7,000만 원 중 C의 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또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나. 제1부동산

제1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분할협약에 따라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C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채권 7,000만 원 중 자신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채권을 양수받은 후 E에게 제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매매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원의 지급을 가액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

다. 제2, 3부동산

제2, 3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근저당권이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 3부동산에 관하여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381,569,573원 및 그 중 168,824,6221원에 대한 2020. 4. 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7. 7.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마. 공동담보가액

1) 제1부동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부동산의 매매잔금채권은 7,000만 원이므로, C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은 15,555,555원(= 7,000만 원 × C의 상속분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 제2, 3부동산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주식회사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F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8. 18. 기준 제2, 3부동산의 가액은 1,006,712,400원이므로, 변론종결 당시 가액도 위 금액으로 추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40,136,700원 및 50,459,962원²⁾이며, 제2, 3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인 I이 2015. 2. 1.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56만 원에 임차하여 2015. 2. 4.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위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인 2019. 2. 1. 종료하였으므로 그 임대차보증금 가액을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임대차가 계속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일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간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 임대차보증금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은 201,359,052원[$\{1,006,712,400\text{원} - (40,136,700\text{원} + 50,459,962\text{원} + 1,000\text{만 원})\} \times 2/9$]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차인 외에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도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 3부동산에 위 임차인 외에 다른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있다거나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9분의 2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15,555,555원의 한도 내에서, 제2, 3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59,052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6,914,607원($= 15,555,555\text{원} + 201,359,052\text{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평근, 판사 이경선, 판사 안근홍

별지

<부동산 목록>

1. 전라북도 김제시 임야 17851㎡

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대 222.3㎡

3. 위 2. 지상건물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로명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 소매점, 사무소,

주택,

다방

1층(철근콘크리트조:소매점) 130.14㎡

2층(철근콘크리트조:사무소) 130.14㎡

3층(벽돌조:주택) 102.66㎡

지층(철근콘크리트조:다방) 130.14㎡ 끝.

1) 청구취지에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6,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모두 2019. 5. 24.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졌고, 다만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등기원인일자만 망인의 사망일자인 2018. 12. 12.로 기재된 것이므로(등기예규 제1675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도 2019. 5. 24. 상속재산 분할협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4,000만 원 및 49,807,706원)보다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